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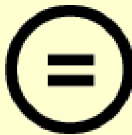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산재종결 이후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정 건 강

산재종결 이후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상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지도 원 종 욱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보건전공

정 건 강

정 건 강의 보건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원 종 욱 인

심사위원 노 재 훈 인

심사위원 윤 진 하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8년 6월 일

감사의 글

보건대학원에 입학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글로 고마우신 분들의 도움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먼저 대학원 석사과정 중 저를 이끌어주시고 항상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이와 같은 결실을 맺도록 많은 가르침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원종욱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시어 논문을 심사해주신 노재훈 교수님, 윤진하 교수님, 대학원 생활 동안 좋은 가르침을 전해주시신 김치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과정 중에 많은 도움을 주신 대학원 선후배, 원우회 선생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논문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권영훈 선생님, 임보름 선생님, 임해민 선생님, 최윤지 선생님, 배숙원 선생님, 김지우 조교님 감사드리고, 대학원 생활을 함께해준 동기 김석현 선생님, 명진혁 선생님, 박채경 선생님, 오혜림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걱정해주시고 부족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해주셨던 아버지, 어머니, 언제나 든든한 동생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입학하여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7월

정 건 강 올림

차 례

국문 요약	v
-------------	---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1) 표본의 크기	3
2) 조사내용	3

II. 연구방법

1. 산재보험패널조사	4
2. 연구대상	5
1) 일반적 특성	5
2) 경제활동상태	5
3) 재해 전 소득	5
4) 소득 구분 및 정의	6
5) 장애등급	6
2. 분석방법	7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등급의 차이	7
2.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9
3. 장애등급에 따른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0
1) 장애등급 1~3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0
2) 장애등급 4~7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2
3) 장애등급 8~14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5
4) 무장애 등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7
4. 4차년도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IV. 고찰	22
--------------	----

V. 결론	24
-------------	----

참고문헌	25
------------	----

Abstract	26
----------------	----

표 차 례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해등급의 차이	8
표 2.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9
표 3. 장해등급 1~3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1
표 4. 장해등급 4~7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3
표 5. 장해등급 8~14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6
표 6. 무장해등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8
표 7. 4차년도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그 립 차 례

그림 1.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0
그림 2.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0
그림 3. 장애등급 1~3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2
그림 4. 장애등급 1~3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2
그림 5. 장애등급 4~7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4
그림 6. 장애등급 4~7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4
그림 7. 장애등급 8~14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7
그림 8. 장애등급 8~14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7
그림 9. 무장애등급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9
그림 10. 무장애등급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	19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산재 요양종결 이후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및 재활, 사회복귀 등의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패널조사에 참여한 2012년 산재 종결자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의 패널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의 소득을 취업 및 자영업 등 재해자의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과 산재장해연금 및 일시금 수입인 산재소득으로 구분하였으며,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산재소득만을 합산하였다.

연구결과 산재 종결 후 소득은 취업군과 미취업군 모두에서 재해 전 소득보다 낮았다. 특히 비교적 직장복귀가 수월하다고 예상되는 장해 8~14급, 무장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산재종결 직후인 1차(2013년)가 가장 낮았고, 이는 산재 종결 후 곧바로 경제적 상태가 재해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종결 후 4년차의 총소득이 재해 전 소득보다 낮은 것은 이후에도 재해 전 소득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4차의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자의 소득이 미취업자보다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산재 근로자의 경제 상태가 재해 후 저하되었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의 재해 이후 소득 보전을 위해서 직장복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핵심어 : 산재보험, 직장복귀, 장해보상, 산재근로자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 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없던 시기, 작업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은 개별 사업주의 책임이었다. 당시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보상까지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걸렸고,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은 필요한 의료처치와 소득보장을 받지 못해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김장기, 윤조덕, 2012)

그러던 것을 국가에서 일정한 보험료를 사업주로부터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

1963년에 제정되고 1964년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은 38차(타법에 의한 개정 포함)에 걸쳐 개정되면서 보험수혜자 확대, 적정한 보상 수준 정립, 보험급여 종류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64년 법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던 산재보험을 '00년부터는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상하던 것을 '82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또한 보험급여 종류도 처음에는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 '08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사회·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2016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6)

하는 등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재할, 복지증진, 보상 등에 있어서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왔다.

1964년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만이 목적이었지만, 산재법 제18차 개정('99.12.31. 법률 제6100호)에서는 산재보험사업의 목적에 ‘산재근로자의 재할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할과 사회복귀, 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근로자 보호’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산재 종결을 하는 경우에 종결시점의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등급을 매겨 장애보상을 하고 있다. 산재 장애등급의 경우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1~3급의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8~14급은 일시금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근로자의 장애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재해 전 소득의 약 70.4%에 불과하다. 만약 산재 종결 이후 재해근로자가 별도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재 장애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소득은 재해 전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 즉 산재 장애보상이 소득을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의 경우 위와 같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장애보상연금의 지급방법은 실제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보상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마승렬, 김명규, 2008).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산재 요양종결 이후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및 재할, 사회복귀 등의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해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연구의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패널조사에 참여한 2012년 산재 종결자이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의 패널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산재보험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업무상재해를 경험한 이후 2012년도에 요양을 종결한 산재요양종결자이다.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모군은 2012년 요양종결 산재근로자 82,493명을 기준으로 표본설계는 장애등급(6개 범주)별 우선 할당 후 지역(9개 권역)별로 비례 배분하였다.

(1) 표본의 크기

표본의 크기는 2,000명(산재장해인 1,650명, 장애가 없는 산재근로자 350명)이며, 2013년부터 매년 8 - 10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였고,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 방문에 의한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노트북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이 때 방문조사가 어려운 제주도 거주자와 지속적인 조사가 용이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인적 특성, 산재보상서비스,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이력, 건강 및 삶의 질, 가구 특성 등이며 위의 조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차의 패널 데이터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1. 산재보험패널조사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와 사회경제적 특성을 폭넓게 다루는 패널조사로써 산재보험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립·운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인 산재근로자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근로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직업복귀 경로를 추적하고, 산재근로자의 현실에 관한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산재보험정책 수립·운영·평가와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종단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산재패널 조사자 2,000명 중 조사거절, 부재, 사망 등의 이유로 조사에 실패한 인원 340명을 제외하고 4차년도 까지 모두 조사에 대답한 총 1,66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연구에 사용된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며, 연령은 20대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하였다.

2) 경제활동상태

산재패널 조사에서는 경제활동 상태를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 무급가족종사, 실업, 비경제활동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중 원직장복귀, 재취업, 자영업을 취업자로 정의하고, 무급가족종사, 실업, 비경제활동을 미취업자로 정의하였다.

3) 재해 전 소득

재해 직전의 근로자가 실제 받던 급여를 ‘재해 전 소득’으로 정의하였다.

패널데이터에서의 명칭은 ‘한달평균임금’이었고, 1차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조사되었다.

재해 전 소득과 각 조사 년차별 소득 비교를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액 증감률을 적용하였다. 각 연도별 평균임금 증감률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70(4.70% 상승)

2014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22(4.22% 상승)

2015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7(2.97% 상승)

2016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6(2.96% 상승)

4) 소득 구분 및 정의

본 연구에서 산재 요양 종결 후 소득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및 총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근로소득은 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에서 발생한 임금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외 소득은 산재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패널 데이터 상 근로외 소득-사회보험급여 중 ‘산재수당-휴업급여’와 ‘산재보험-장해연금’, ‘사회보험급여-실업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총소득은 위에 정의한 근로소득과 근로외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정의하였다.

5) 장해등급

산재보험에서 장해등급은 1~14급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3급, 4~7급, 8~14급 및 무장해의 4군으로 구분하였다.

2.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처리 프로그램 (SPSS/21.0 PC)으로 분석하였다.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과 재해 전 소득의 차이와 장애등급에 따른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과 재해 전 소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등급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등급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8~14급이 여성보다 많았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무장해가 많았다. 연령이 많을수록 무장해는 적었고 1~3급은 많았다. 산재 특성의 차이를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하면, 사고 군에서 질병 군보다 무장해자가 더 많았으며, 장애 1-3급은 질병군보다 적었다. 장애 1~3급과 4~7급 군에서는 미취업자가 더 많았으며, 8급 이하에서는 취업자가 더 많았다.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등급의 차이

단위 : 명(%)

		1~3급	4~7급	8~14급	무장애	P
성별	남자	24 (1.7)	59 (4.3)	1078 (78.0)	221 (16.0)	P=0.000
	여자	1 (0.4)	9 (3.2)	194 (69.8)	74 (26.6)	
연령	20대이하	0 (0.0)	3 (6.5)	24 (52.2)	19 (41.3)	P=0.000
	30대	1 (0.6)	4 (2.3)	121 (69.5)	48 (27.6)	
	40대	5 (1.4)	13 (3.5)	291 (78.6)	61 (16.5)	
	50대	10 (1.7)	23 (4.0)	453 (78.9)	88 (15.3)	
	60대이상	9 (1.8)	25 (5.0)	383 (77.2)	79 (15.9)	
	무학	1 (1.5)	4 (6.1)	51 (77.3)	10 (15.2)	
	초졸	6 (2.1)	8 (2.8)	220 (78.0)	48 (17.0)	
최종 학력	중졸	6 (1.9)	13 (4.1)	249 (78.8)	48 (15.2)	P=0.262
	고졸	12 (1.6)	31 (4.2)	567 (76.8)	128 (17.3)	
	대졸이상	0 (0.0)	12 (4.7)	185 (71.7)	61 (23.6)	
	사고/	19 (1.2)	62 (4.1)	1168 (76.6)	275 (18.0)	P=0.028
	질병	6 (4.4)	6 (4.4)	104 (76.5)	20 (14.7)	
직장 복귀	취업	1 (0.1)	44 (3.3)	1050 (78.2)	248 (18.5)	P=0.000
	미취업	24 (7.6)	24 (7.6)	222 (70.0)	47 (14.8)	
	전체	25 (1.5)	68 (4.1)	1272 (76.6)	295 (17.8)	

2.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과 재해 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군의 경우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모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도별 평균임금 증가율로 보정한 연차별 재해 전 소득보다 연차별 총소득이 더 낮았다.

미취업군의 경우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모두 연차별로 감소하였으며, 재해 전 소득보다 낮았다.

표 2.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4차	
취업	근로소득	139.37 [#] ± 98.6	207.69 ± 120.1	215.73 ± 119.9	221.40 ± 117.3				
	근로외 소득	65.95 ± 59.2	39.24 ± 39.3	73.86 ± 61.6	91.88 ± 51.4				
	총소득	178.87 ± 110.9	208.75 ± 122.3	217.77 ± 120.5	223.37 ± 118.4				
미취업	근로소득	81.03 ± 79.63	132.69 ± 104.8	113.19 ± 79.0	157.15 ± 112.0				
	근로외 소득	82.25 ± 66.3	85.25 ± 79.5	111.07 ± 85.9	130.13 ± 93.6				
	총소득	119.33 ± 86.9	118.28 ± 99.6	116.54 ± 81.1	155.75 ± 104.6				
재해 전 소득		225.40 ± 104.83	236.00 ± 109.8	245.96 ± 114.4	253.26 ± 117.8	260.76 ± 121.3			
취업군의 소득차이		-57.13	-37.21	-35.49	-37.39				
미취업군의 소득차이		-116.67	-127.68	-136.72	-105.01				

※ #. 평균 + 표준편차

※ 소득차이 = 연차별 총소득 평균 - 연차별 재해 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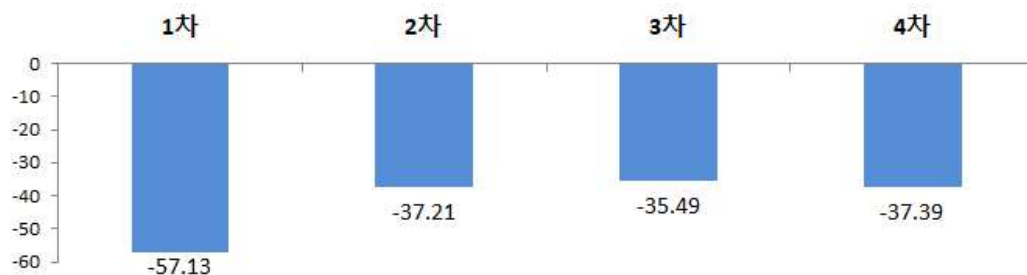


그림 1.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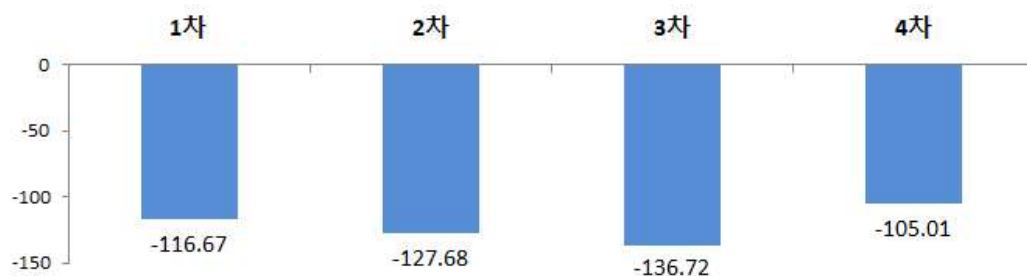


그림 2.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3. 장애등급에 따른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1) 장애등급 1~3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장애등급 1-3급 군에서는 취업자가 1명 뿐이어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없었지만, 이를 재해 전 소득과 비교해 보면 소득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취업군의 경우 2013년(1차)부터 2015년도(3차)까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의 소득, 총소득 모두가 감소하다가 2016년도(4차)에 다시 증가하였으나,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표 3. 장해등급 1~3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단위 : 만원

		1차	2차	3차	4차
취업	근로소득	91.67	150.00	150.00	150.00
	근로외 소득	96.17	131.25	149.52	154.33
	총소득	187.83	281.25	299.52	304.33
미취업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180.23 ± 95.1	159.08 ± 93.0	169.54 ± 91.6	184.51 ± 97.3
	총소득	180.23 ± 95.1	159.08 ± 93.0	169.54 ± 91.6	184.51 ± 97.3
재해 전 소득		209.67 ± 88.96	219.52 ± 93.1	227.59 ± 98.0	240.45 ± 101.3
취업군의 소득차이		-31.69	53.66	59.07	56.76
미취업군의 소득차이		-39.29	-68.51	-70.91	-63.06

※ 소득차이 = 연차별 총소득 평균 - 연차별 재해 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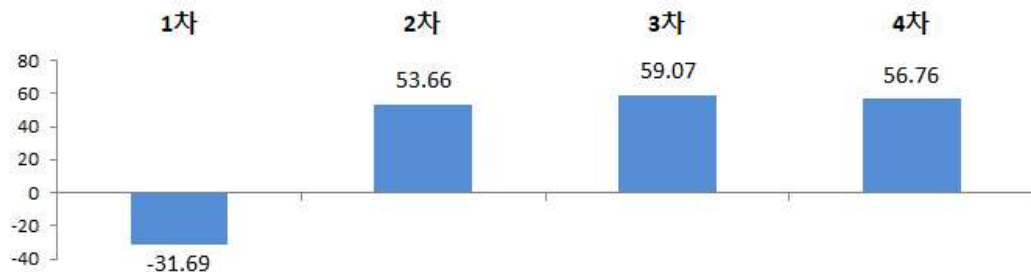


그림 3. 장해등급 1~3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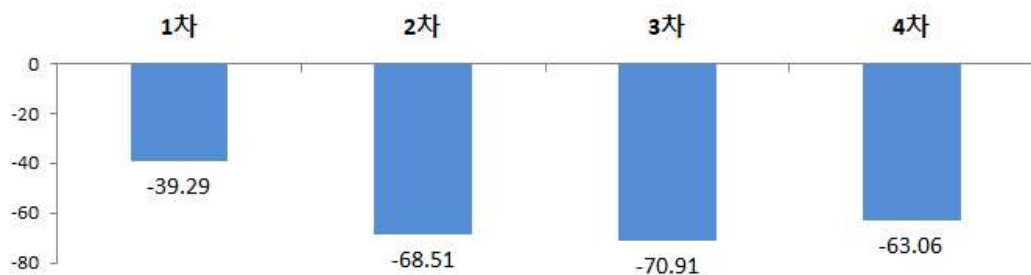


그림 4. 장해등급 1~3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2) 장해등급 4~7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장해등급 4~7등급군의 경우 산재 장해급여가 일시금과 연금 수급자로 구분될 수 있지만 패널 자료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시금 수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에서 1차년도 근로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그렇지만 재해 전 소득 보다는 낮았다. 우선 취업군의 경우 2015년도(3차)를 제외하고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소득은 증가하였다. 근로의 소득은 2013년도(1차)가 가장 높았으며, 2014년도(2차)가 가장 낮았다. 총소득은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증가하였으나, 재

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미취업군의 경우 근로소득은 2014년도(2차)가 가장 높았으며, 2013년도(1차)가 가장 낮았다. 근로외 소득과 총소득은 2013년도(1차)부터 2015년도(3차)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도(4차)에 다시 증가하였지만,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취업자의 소득의 차이가 미취업자의 소득의 차이보다 작았다.

표 4. 장해등급 4~7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단위(만원)

		1차		2차		3차		4차	
취업	근로소득	126.61 ± 78.3	202.88 ± 87.9	191.94 ± 89.3	209.74 ± 82.4				
	근로외 소득	109.86 ± 73.5	76.42 ± 44.2	101.34 ± 49.7	108.70 ± 48.9				
	총소득	210.26 ± 114.6	234.65 ± 125.0	243.15 ± 111.3	259.67 ± 123.3				
미취업	근로소득	89.50 ± 69.3	208.33 ± 68.7	- ± -	108.33 ± 35.4				
	근로외 소득	119.40 ± 78.0	70.64 ± 36.5	97.69 ± 47.7	129.57 ± 48.4				
	총소득	129.34 ± 83.9	102.79 ± 86.4	97.69 ± 47.7	134.69 ± 53.2				
재해 전 소득	235.99 ± 106.87	247.08 ± 111.9	258.20 ± 113.5	263.76 ± 118.4	268.15 ± 120.5				
취업군의 소득차이		-36.82	-23.55	-20.61	-8.48				
미취업군의 소득차이		-117.74	-155.41	-166.07	-133.46				

※ 소득차이 = 연차별 총소득 평균 - 연차별 재해 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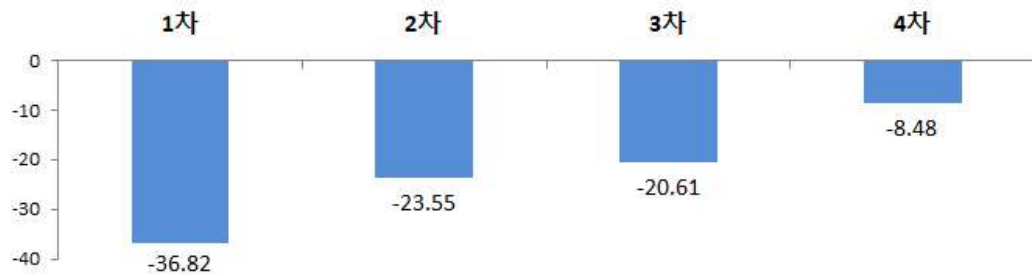


그림 5. 장해등급 4~7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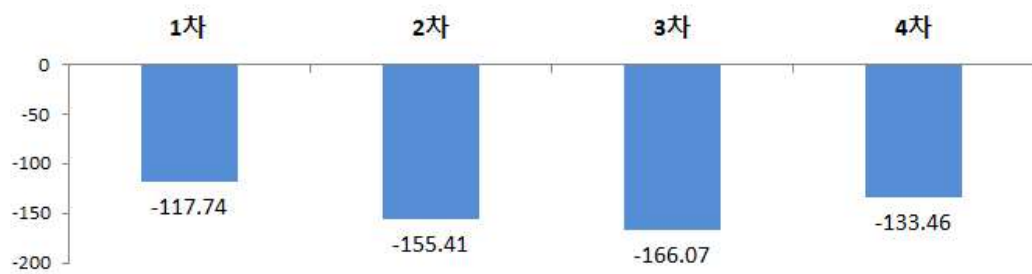


그림 6. 장해등급 4~7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3) 장해등급 8~14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8~14등급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과 재해 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군의 경우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소득과 총소득은 증가하였으며, 2014년도(2차)도에 근로외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외 소득은 감소하였다.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미취업군의 경우 2013년도(1차)부터 2015년도(3차)까지 근로외 소득, 총소득이 감소하다가 2016년도(4차)에 다시 증가하였으며, 근로소득은 2015년도(3차)를 제외하고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증가하였다.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표 5. 장해등급 8~14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단위(만원)

		1차		2차		3차		4차	
취업	근로소득	135.17	± 96.4	209.05	± 122.8	217.77	± 121.5	222.11	± 117.8
	근로외 소득	69.75	± 59.8	27.24	± 26.4	50.43	± 61.6	46.88	± 21.9
	총소득	177.80	± 110.5	208.64	± 124.2	218.27	± 121.5	222.30	± 117.6
미취업	근로소득	74.82	± 77.2	129.95	± 114.4	113.66	± 78.7	151.67	± 100.0
	근로외 소득	76.50	± 56.9	30.52	± 29.3	29.59	± 23.8	32.01	± 14.0
	총소득	112.98	± 82.7	111.84	± 110.8	103.84	± 78.7	146.08	± 100.5
재해 전 소득		228.83	± 104.29	239.58	± 109.2	249.41	± 113.7	256.08	± 116.8
		262.68	± 120.1						
취업군의 소득 차이		-61.78		-40.77		-37.81		-40.38	
미취업군의 소득차이		-126.6		-137.57		-152.24		-116.6	

※ 소득차이 = 연차별 총소득 평균 - 연차별 재해 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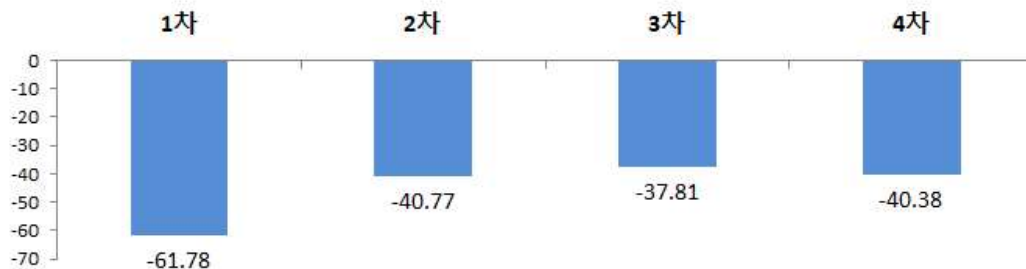


그림 7. 장해등급 8~14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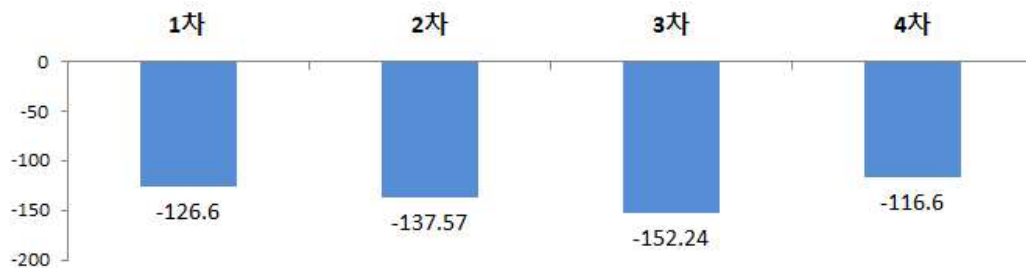


그림 8. 장해등급 8~14급에서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4) 무장해 등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무장해 연차별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과 재해 전 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취업군의 경우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소득과 총소득은 증가하였으며, 근로외 소득은 2014년도(2차)에 가장 높았으며, 2015년도(3차)에 가장 낮았다.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미취업군의 경우 근로소득은 2016년도(4차)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도(3차)가 가장 낮았다. 근로외 소득은 2013년도(1차)부터 2015년도(3차)까지 감소하였다. 총소득은 2016년(4차)에 가장 높았으며, 2014년(2차)에 가장 낮았다.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표 6. 무장해등급에서 재해 전 소득과 연차별 소득

단위(만원)

		1차		2차		3차		4차	
근로소득		156.15	± 107.0	203.00	± 113.2	211.20	± 117.6	220.66	± 120.5
취업	근로외 소득	41.02	± 43.6	50.91	± 57.6	8.38	± 2.6	44.54	± 4.1
총소득		178.69	± 112.0	205.18	± 114.2	211.30	± 117.5	221.03	± 120.4
근로소득		107.21	± 86.8	123.24	± 65.7	111.46	± 82.7	184.48	± 154.97
미취업	근로외 소득	52.25	± 55.2	44.31	± 39.5	31.27	± 16.5	11.69	± -
총소득		128.47	± 101.6	113.78	± 65.5	116.98	± 81.2	174.32	± 155.8
재해 전	소득	209.22	± 106.65	219.05	± 111.7	226.13	± 114.8	237.07	± 120.5
		239.76	± 123.2						
취업군의 소득 차이		-40.36		-20.95		-25.77		-18.73	
미취업군의 소득차이		-90.58		-112.35		-120.09		-65.44	

※ 소득차이 = 연차별 총소득 평균 - 연차별 재해 전 소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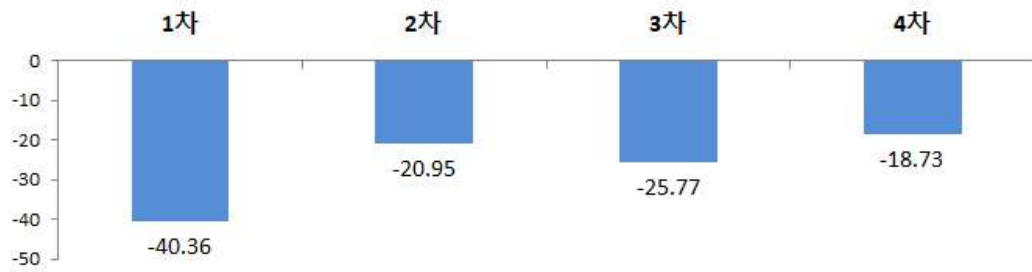


그림 9. 무장해등급의 재해 전 소득과 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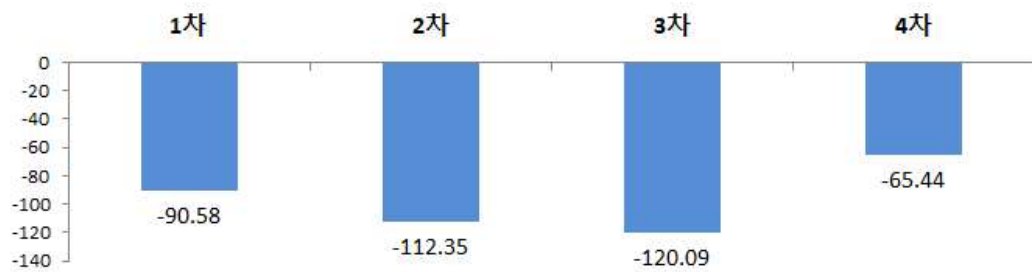


그림 10. 무장해등급의 재해 전 소득과 미취업군의 총소득 차이.

4. 4차년도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차년도 총소득은 향후 소득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차년도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연령, 최종학력, 사고/질병, 장애등급, 직장복귀유무를 독립변수로 선택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소득이 높았고, 20대에 비해 40대와 50대의 소득이 높았다. 장애등급은 총소득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취업자의 소득이 의미있게 높았다.

표 7. 4차년도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Std. Error	β	t	공차 한계	VIF
상수			51.587		28.471	1.812	
성별	남성(ref :여성)	90.630	7.856	0.271	11.536***	0.953	1.050
	(ref :20대 이하)						
연령	30대	29.771	18.995	0.080	1.567	0.201	4.964
	40대	38.113	18.064	0.138	2.110*	0.122	8.216
	50대	35.826	17.990	0.144	1.991*	0.101	9.915
	60대 이상	-13.973	18.717	-0.052	-0.746	0.110	9.128
(ref :무장해)							
장해등급	1~3급	25.508	23.935	0.028	1.066	0.759	1.318
	4~7급	17.256	14.939	0.029	1.155	0.819	1.221
	8~14급	-8.620	7.247	-0.031	-1.189	0.771	1.297
(ref :무학)							
학력	초졸	3.492	16.958	0.011	.206	0.197	5.079
	중졸	30.152	16.848	0.099	1.790	0.171	5.853
	고졸	52.873	16.703	0.222	3.166*	0.106	9.391
	대졸 이상	85.120	17.957	0.267	4.740***	0.165	6.064
사고/질병	사고(ref :질병)	-38.288	9.806	-0.090	-3.905***	0.987	1.013
직장복귀	취업(ref :미취업)	68.411	10.888	0.162	6.283***	0.789	1.267

R²=250, 수정된 R²=242

F=34.052, p=0.000, Durbin-Watson=1.804

* p<0.05, ** p<0.01, *** p<0.001

IV. 고찰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산재 요양종결 이후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및 재활, 사회복귀 등의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산재보험패널조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 중 취업군의 경우 2013년도(1차)부터 2016년도(4차)까지 근로소득, 근로외 소득, 총소득 모두가 증가하였으나, 재해 전 소득보다는 낮은 소득이었다. 세부적인 특징으로는 1차년도의 근로외 소득은 장해연금의 선급금 또는 일시금 수급자의 영향으로 다른 차수에 비하여 일시적으로 높지만, 2차년도가 1차년도에 비해 감소 후 3차, 4차에 걸쳐 점차 높아졌다. 장해등급 1~3등급의 총소득의 경우 취업자의 경우 1명 뿐이지만, 4차년도 기준 취업자 총소득이 미취업군의 총소득에 비해 약 119만원 높았다. 장해등급 4~7등급의 총소득의 경우 4차년도 기준 취업군이 미취업군에 비해 총소득 약 125만원 높았다. 장해등급 8급, 무장해등급에서도 취업군이 미취업군에 비해 총소득이 높았다.

종합해보면 산업재해 후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상태는 취업, 미취업 그룹 모두 전체적으로 총소득이 재해 전 소득보다 하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비교적 재취업이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 장해등급 8~14등급, 무장해 등급 그룹에서도 총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요양 종결 후 취업 여부가 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그룹과 미취업그룹간의 총소득의 차이를 보건대 취업그룹보다 미취업그룹에서 더욱 뚜렷한 총소득 저하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산재 요양 종결 이후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행되는 4차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도 여전히 미취업자가 전체 1660명 중 317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산재

보험의 직업복귀지원 및 고용유지 등의 지원 서비스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직장복귀여부가 총소득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고려해볼 때 산재 종결한 근로자의 원직장복귀 및 직장복귀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보다 더 다양한 원직장복귀지원 및 고용유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산재보험패널조사에서 장해급여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선급금을 수급한 사람, 장해등급 4~7급의 경우 일시금을 수급한 사람의 통계 값이 2013년도 근로외 소득 및 총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조사시점에는 미취업 상태이지만 1년 기간을 전제로 보았을 때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취업자로 분류가 되었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를 통해 산재종결 후 재해근로자의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직장복귀 여부, 장해등급의 범주별 구분으로 분석한 결과, 산재 종결한 근로자의 경제적 상태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분한 군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향후 제도상의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해볼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산재 요양종결 이후의 경제적 상태 변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상 및 재활, 사회복귀 등의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평가해보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재요양 종결한 근로자들의 재해 전 소득과 2013년부터 2016년 총소득의 차이를 고려해볼 때 점차 매년 거둬들일수록 차이는 줄어들고 있지만, 산재종결 이후 4년간이나 취업, 미취업그룹 모두 총소득이 재해 전 소득보다 낮았다. 특히 4차년도(2016년)의 총소득이 재해 전 소득과 여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향후에도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차년도의 총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40대 및 50대, 대졸자 및 취업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론적으로 1차~4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볼 때 산업재해를 당하기 전보다 산재 요양종결 이후 경제적 상태가 저하되었고, 저하된 경제상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즉,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복귀, 재해의 예방,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산재종결 후 지급되는 장해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이전보다 더욱 효과적인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산재종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수준의 변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고, 산재 종결 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고용노동부. 2016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2017.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제4차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 2017.

김장기, 윤조덕. 산재보험제도의 구축과 운영. 고용노동부 2012.

이달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연금의 법적 성질 및 장해등급에 대한 미국과 비교. 중앙법학 2018; 20(1): 183-229.

마승렬, 김명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체계의 적정성 분석. 보험개발연구 제 19권 2008; 제3호.

<ABSTRACT>

A Research on the Change of Economic Condition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 after the End of
Industrial Accident Care

Gun Gang Jeo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wook Won, M.D., Ph.D.)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economic condition of industrial accident workers after the end of industrial accident care and to examine whether the programs such as compensation, rehabilitation and

returning to the workplace are reasonably operated in Korea.

The subject of this research is the industrial accident worker who completed the industrial accident care in 2012 and participated in the survey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panel. The analysis is based on the 4th-panel data from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from 2013 to 2016.

In this study, the income of the accident worker was divided into earned income through the labor of the accident and industrial accident income through industrial disability pension and lump sum income. Gross income was totaled up by earned income and industrial income.

The result shows that income after the end of industrial accident care was lower than pre-accident income in both employed and unemployed groups. In particular, the earning income of the industrial accident workers with disability grades from 8-14, which is expected to be relatively easy to return to work, and those without disabilities, were the lowest in the first-panel survey in 2013 immediately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are.

This means that the economic condition is not immediately recovered to the pre-accident level after the end of the industrial accidents care. It is also shown that after its termination gross income in the 4th-panel survey in the year of 2016 is lower than pre-accident income, which means it is less likely to be recovered to pre-accident income level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factors affecting the 4th year gross income found that the income of the employed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unemployed.

It is assessed that the economic status was deteriorated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and this situation is highly likely to be continued. Consequently, more efforts are needed in returning to the workplace in order to protect the accidents' income after the industrial accident.

.....

key words :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eturn to work, the payment schemes of disability benefits, industrial accident workers